

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7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7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기능이 감소된 치산사업소를 폐지하여 임업시험장에 통합하기 위하여
- 기존의 임업시험장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기구인 "산림환경연구소"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'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'로 하고
- 사업소의 기능을 당초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기능에서 사방사업의 설계, 시공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한편,
- 조문중에 "시험장장"을 "연구소장"으로, "장무"를 "소무"등으로 변경된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
- 부칙에서 "치산사업소조례"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임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의거 기존의 치산산업소를 임업시험장에 통합함에 따라 기존의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기구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종전의 치산사업소 조례를 동시에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서,

통합되는 사업소의 명칭을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로 하고 사업소의 기능에 있어 종전 임업에 관한 시험 연구 및 우량묘목 생산, 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의 기능에 치산사업시행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방 사업의 설계 시공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한편

사업소의 명칭이 연구소로 바뀜에 따라 조문중 관련 명칭과 조문 내용을 변경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첨부

-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.